

Muan Web Contents

2021년 06월 19일 19시 02분



목차

목차	2
주정차위반	3
의견진술 신청안내	3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3
의견진술 신청	3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3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3
결과통보 : 통지서 발송	4

주정차위반

자주하는질문과 답변

주정차위반안내	무인(CCTV)단속지역	단속법규	단속처리절차
의견진술절차 안내	이의제기절차 안내	과태료납부 안내	과태료감경제도 안내

의견진술 신청안내

군청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 된 후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신청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이내
2. 심의위원회심의

- 의견미수용 : 과태료부과
- 의견수용 : 과태료미부과

의견진술 신청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일반치료는 제외)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방문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내용 작성하여 직접제출(진술내용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진술서와 함께 제출)
- FAX이용 : 차량번호, 단속일시, 단속장소, 연락처, 진술내용 등을 작성하여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팩스(061-450-5130)

(<http://www.muang.go.kr>)

결과통보 : 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 제출일로부터 30일 ~ 50일 가량 경과 후 군청의 심의결과 (의견수용-과태료면제, 의견미수용-과태료부과)를 의견진술서상의 주소로 우편통보
- 결과통보 직후 의견미수용(과태료부과) 대상 자료에 한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차량주소지로 송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전화번호 : 061-450-5679, 5692

MUAN

Web Contents

 무안군